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 안 번 호	2230

제출년월일 : 2021년 2월 5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옥수동 주택가는 주변 주차수요가 높음에도 성동구에서 주차확보율이 64%(서울시 평균 102%)로 매우 낮아 도로상에 불법주차량이 많아 심야 시간대는 화재 등 유사시 도시안전에 문제가 있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여 성동구에서 옥수유수지 복개 및 유수지상부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나. '20년 6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하여 경제성 및 사업 타당성 등의 적합함을 증명하였고 사업추진을 통한 유수지 주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옥수빗물펌프장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시유지 상에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토지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77-1번지, 77-3번지
○ 면　　적 : 1,154.4㎡
○ 소 유 자 : 서울특별시(재산관리관 : 하천관리과)
○ 도시계획시설 : 유수지, 주차장
○ 공시지가
- 〈옥수동 77-1〉 353,407천원〔㎡당 공시지가 2,059천원 × 면적 171.64㎡〕
- 〈옥수동 77-3〉 4,292,783천원〔㎡당 공시지가 4,368천원 × 면적 982.78㎡〕

나. 시설 개요

○ 시설물(용도) : 옥수유수지 공영주차장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77-3번지 등 6필지

○ 시설규모 : 연면적 1,326.42㎡, 주차장 47면

○ 사 업 비 : 3,376백만원(주차장특별회계, 시비, 구비편성)

- 시비 2,026백만원(주차계획과), 구비1,350백만원(성동구 교통지도과)

- 설계·감리비 302백만원, 공사비 3,064백만원, 시설부대비 10백만원

○ 사업기간 : 2018. 11. ~ 2021. 12.

- 의회동의 사전절차 이행기간 포함(건립계획방침, 중기재정계획, 타당성 조사용역, 중앙투자심사, 기본 및 실시설계 등)

○ 주요시설 : 주차장 47면, 관제시설, CCTV 등

다. 그간의 추진사항

○ '18.11. : 타당성 조사용역 시행(구비 20백만원)

○ '19. 5. : 서울연구원 타당성 검증

○ '19. 7. : 市 투자심사의뢰

○ '19. 8. : 옥수빗물펌프장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자치구 의사 결정)

○ '19. 9. : 市 투자심사 결과 '반려'

- 주차장 출구 및 주차구획 위치 변경

- 서울시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에 주차장건립계획 반영 후 추진

※ 당초 복개하여 공원조성('13) → 변경 공영주차장 조성('19)

○ '19.10.~'20. 4. : 市유관부서 협의(하천관리과, 물순환정책과 등)

○ '20. 4. :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용역준공(하천관리과)

- 옥수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반영

○ '20. 4. : 市 투자심사 의뢰서 제출(市 주차계획과)

- 보완내용 : 市 유관부서 의견 반영, 투자심사 자료 보완

○ ’20. 6. : 市 투자심사 통과(조건부)

- 국유지 사용협의
- 진출입로 일원화 등 최적안 검토

○ ’20. 7.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 ’20.10. : 영구시설물 축조 및 사용료감면 협조

- 성동구 → 市하천관리과

○ ’20. 7.~’20.11. : 추가 협의사항 설계에 반영조치

- 방재성능 확보, 구조검토, 복개기초 간격, 높이 등(하천관리과→성동구)

○ ’20.12. : 구비(13억원) 사고이월 조치(자치구 예산)

- ’19년 명시이월 6억, ’20년 예산 7억

라. 향후 추진일정

○ ’21. 2. ~ 3. : 시의회 안건상정

- 시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21. 3. : 공유재산 심의 제출(자산관리과)

- 시유지 토지사용료 감면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상정

○ ’21. 3. ~ 12. : 공사시행 및 준공

○ ’21.12. : 주차장 운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법률 제17765호, 시행 ’21.1.1.〕

제13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법률 제31380호, 시행 '21.1.5.〕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 또는 공공용재산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2019-89호, 시행 '19.12.15.〕

제7조(영구시설물의 축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경우 그 설치하는 시설물로 인해 사용용도·목적 등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여야 한다.
②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경우 〈별표 2〉의 내용을 참고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 2] 영구시설물 축조 기준 (제7조 관련)
8.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국가는 제외) 공용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합의와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 소유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문서상 합의가 있어야 하며,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나. 토지 소유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7782호, 시행 '20.12.31.〕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③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에 따라 하천관리과장 소관 공유재산의 관리사무를 재산소재지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58호, 시행 '20.9.10.〕

제119조(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2. 유수시설은 원칙적으로 복개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수시설을 복개할 수 있다.

가. 유수시설에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유수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리하고, 홍수 등 재해발생상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2호가목에 따라 복개된 유수시설은 도로·광장·주차장·체육시설·자동차운전연습장 및 녹지의 용도로만 사용할 것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table>
<tr><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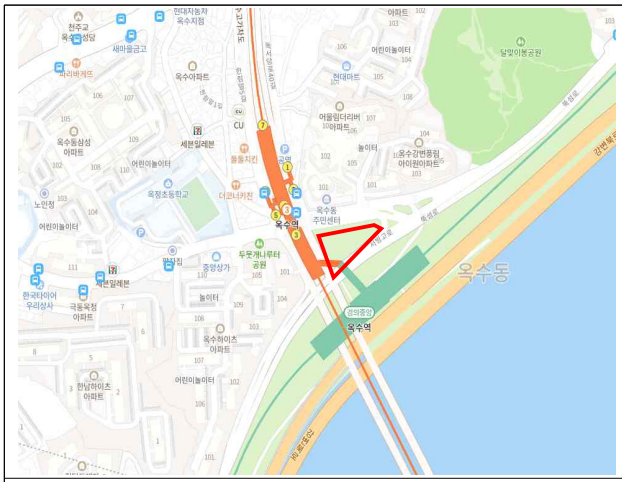
</td><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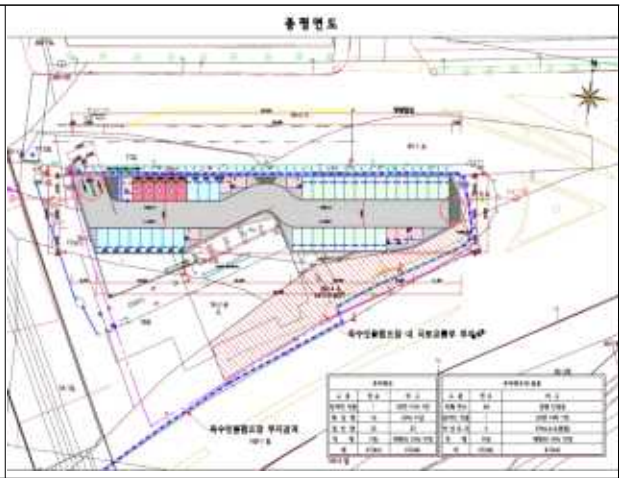 </td></tr>
<tr><td>위 치 도</td><td>배 치 도</td></tr>
</table>

※ 작성자 :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민병훈 (☎ 02-2133-3873)